

韓國 物品管理의 考察

俞

焄*

〈目 次〉	
I. 序 說	IV. 物品의 取得
II. 物品管理와 物品管理法	V. 物品의 保管과 使用
III. 物品管理組織	VI. 物品의 處分

〈要 約〉

豫算論이나 購買行政에 財務行政論에서 研究하여야 할 문제로서 物品管理・國有財産管理・債權管理 등의 政府의 財産管理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 財務行政論은 이러한 분야를 비교적 소홀히 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政府의 財産管理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物品管理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物品管理를 담당하는 組織을 위시하여 物品의 取得・使用・保管・處分 등의 제문제에 관하여 서설적인 고찰을 시도함으로써 우리나라 物品管理의 研究에 一助가 되고자 한다.

I. 序 說

1. 財務行政論의 研究對象

財務行政論의 研究對象에 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見解가 제시되었다. L.D. White는 財務行政論의 研究對象으로서 ① 豫算의 編成・審議, ② 豫算의 執行, ③ 會計의 記錄, ④ 會計의 檢査를 들었다.¹⁾ M.E. Dimock은 財務行政의 研究對象으로서 ① 豫算, ② 會計, ③ 監査, ④ 購買를 든 다음²⁾ 이러한 분야를 제대로 理解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政策의 分野를 아울러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섯개의 政策分野를 들고 있다.³⁾

White나 Dimock 어느쪽 見解를 택하든지간에 財務行政論의 주된 研究對象은 會計檢査를 포함하는 豫算過程과 購買行政에 限定된다는 結論이 나온다. Dimock

*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教授

1) Leonard D. White,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fourth edition (New York: Macmillan, 1955), p. 225.

2) Marshall E. Dimock and G.O. Dimock, *Public Administration* (New York: Rinehart, 1953), p. 185.

3) *Ibid.*, p. 188.

이 여섯가지 政策分野를 들고 있기는 하나 그것은 財務行政論의 研究對象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부수적인 분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近來에 와서 著者들 중에는 財務行政論의 研究對象을 좀더 넓게 잡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Mikesell은 그의 「財務行政論」에서 豫算過程뿐만 아니라 歲入論까지 다루고 있다.⁴⁾

우리 나라 財務行政論 教科書의 著者들을 본다면 豫算論과 購買行政외에 비교적 研究對象을 넓게 잡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申武燮教授는 「租稅體制와 稅務行政」이라는 章을 두고 있으며⁵⁾ 朴英熙教授는 租稅論編에 3個章을 두고 있다.⁶⁾ 申武燮教授나 朴英熙教授보다 다소 研究對象을 넓게 잡은 사람은 李鍾益教授이다. 李教授는 豫算論과 購買行政외에 「物品管理」, 「地方財政」, 「政府와 企業」의 3個章을 두고 있다.⁷⁾ 이들보다 더욱 넓게 잡는 著者는 趙昌鉉教授이다. 趙教授는 豫算論과 購買行政외에 여러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公共經濟論編에 7個章, 公共收入과 支出論編에 5個章, 地方財政論編에 6個章을 두고 있다.⁸⁾

2. 物品管理研究의 重要性

筆者는 다른 機會에 「政府契約」을 고찰한 바 있으며 財務行政論에서 政府契約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⁹⁾

政府契約외에 財務行政論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서 筆者는 物品管理, 國有財産管理, 債權管理과 같은 政府財産管理의 문제를 들고자 한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분야가 物品管理라고 생각한다. 政府豫算의 많은 부분이 物品의 購買를 위하여 지출되며 政府가 소유하는 物品은 방대한 量에 달하나 物品의 管理는 豫算管理만큼 중요시되지 않고 있다.

전술한 우리나라 著者들 중의 李鍾益教授만이 物品管理를 다루고 있으며 다른 著者들은 物品管理를 깊이있게 다루고 있는 것 같지 않다. 筆者도 1963년에 刊行한 財務行政論初版 이후 修正을 가할때 마다 考察의 範圍를 다소 넓혀 왔으나 物品管理를 다루지 않았다.

4) John L. Mikesell, *Fiscal Administration: Analysis and Applications for the Public Sector*, second edition (Chicago: Dorsey Press, 1986).

5) 申武燮, 財務行政學(서울: 大永文化社, 1989).

6) 朴英熙, 財務行政論, 第2版(서울: 茶山出版社, 1989).

7) 李鍾益, 財務行政論(서울: 博英社, 1891).

8) 趙昌鉉, 財務行政論(서울: 法志社, 1986).

9) 俞 烈, 「政府契約의 序說的 考察」, 行政論叢 第29卷 第1號(1991), pp. 112-121.

우리는 이곳에서 物品管理의 適用對象, 物品管理組織, 物品의 取得・保管・使用・處分 등을 중심으로 物品管理에 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Ⅱ. 物品管理와 物品管理法

1. 物品管理의 意義

物品管理란 政府物品의 取得・保管・使用 및 處分을 合理的으로 수행함으로써 物品의 效率적이고 적절한 管理를 圖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後述하는 바와 같이 物品이란 政府財産 중에서 不動産이나 債權을 除外한 動産을 말하는데 이러한 物品의 購買를 위하여 政府는 每年 많은 豫算을 使用할 뿐만 아니라 政府가 그동안 購入하여 현재 보유하고 사용하는 物品이 방대한 량에 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物品의 管理責任者를 지정하고 이를 적절히 取得・保管・使用・處分하는 일이 豫算의 管理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하겠다.

2. 物品管理法의 制定과 改正

가. 物品管理法의 制定

이와 같이 物品管理가 중요함에도 不拘하고 政府樹立후에도 動産의 管理를 規律하기 위한 法律이 오랫동안 制定되지 않았으며 日政時代에 사용하던 物品會計規則을 답습해 왔다.

1951년에 제정된 財政法은 物品管理에 관해서 아무런 言及이 없었으나 5·16 후에 제정된 1961년의 豫算會計法은 그 第1條 第2項에서 物品과 國有財産의 管理와 會計에 관하여 따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 豫算會計法의 규정에 의거하여 1962年 1月 20일에 物品管理法이 제정 공포되어 1963年 1月 1일부터 시행되고 1889年 6月 勅令 第48號로 公布되었던 物品會計規則이 廢止되게 되었다.

나. 物品管理法의 改正

1962년에 제정된 物品管理法은 1963년에 이르러 第3共和國憲法의 시행에 따라서 改正을 위시하여 1972年과 1989年에도 改正이 있었다.

1989년의 豫算會計法 全文改正에 의하여 物品管理法도 改正의 必要性이 發生하였다. 예를 들면 物品管理法의 適用對象에서 除外되는 動産의 範圍를 규정한 物品管理法 第2條 第1項의 규정중 「法令의 규정에 의하여 韓國銀行에 寄託하

하여야 할 有價證券」은 「法令의 규정에 의하여 韓國銀行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에 기탁하여야 할 有價證券으로 改正되어야 할 것이나 아직은 改正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物品管理法의 適用範圍

物品管理法은 行政府뿐만 아니라 立法府와 司法府를 위시한 모든 獨立機關에도 適用된다.

物品管理法은 도처에서 「中央官署의 長」이라는 用語를 사용하고 있는데 物品管理法 第2條 第2項은 이 法에서 中央官署의 長이라 함은 豫算會計法 第14條의 규정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豫算會計法 第14條는 中央官署의 長이라 함은 國會議長, 大法院長, 憲法裁判所長, 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政府組織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中央官署의 所屬機關은 실사 國外에 있다고 하더라도 特別한 규정이 없는 한 物品管理法의 적용을 받는다.

4. 物品管理法의 適用對象物品

가. 物品의 概念

物品管理法의 適用對象은 物品이다. 物品이란 動産을 말하는데 動産은 不動産 以外의 物件이다.¹⁰⁾

物品管理法의 對象이 되는 物品은 國家가 所有하는 動産과 國家가 保管하는 動産으로 大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좀 더 具體的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國家가 所有하는 動産

物品管理法의 대상이 되는 첫째 그룹의 物品은 國家가 所有하는 動産이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國家가 所有權을 保有하는 動産이다. 國家가 所有權을 보유하게 된 原因은 대부분의 경우에 歲出豫算에 의거한 契約 및 現金의 지급에 의한 구입이다.

國家가 所有權을 지니는 이러한 動産은 物品管理法의 規制對象이 되는데 여기까지 理由로 이러한 動産중에서 物品管理法의 規制對象에서 除外되는 動産은 ① 現金, ② 韓國銀行에 寄託하여야 할 有價證券, ③ 國有財産에 해당하는 動産, ④ 軍需品이다.¹¹⁾

10) 民法 제99조 제2항.

11) 物品管理法 제2조 제1항.

다. 國家가 사용하기 위하여 保管하는 動產

國家가 그 事務 또는 事業을 위하여 사용하는 動產은 일반적으로 每年度 國會의 議決을 얻어서 성립하는 歲入豫算에 의하여 구입되며 國家가 그 所有權을 取得한 것이다.

그러나 國家가 필요로 하는 모든 動產에 관하여 國家가 반드시 所有權을 取得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두번 사용하는 機械나 器具와 같은 것도 國家가 구입한다는 것은 지극히 非經濟的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國家 以外의 者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國家가 필요할 때 賃借하여 사용하는 것이 훨씬 經濟的인 財政處理方法이라 하겠다.

이밖에도 國家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物品인 까닭에 國家가 所有하기를 원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所有權者의 사정으로 國家가 구입할 수가 없으며 賃借만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政府가 主催하는 展覽會 등에 民間部門의 個人이나 企業이 소유하는 특정한 物品을 一時的으로 借用하여 陳列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여러 경우에 民間部門의 個人이나 企業이 소유하는 物品을 政府가 借用하여 保管하고 政府가 사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物品도 物品管理法의 規制를 받게 되는 것이다.

政府가 소유하지 않는 이러한 物品에도 物品管理法이 적용되는 이유로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우리는 다음의 몇가지를 들고자 한다.

첫지는 借用動產의 適正한 保管이다. 民間部門의 個人이나 企業이 소유하는 動產을 亡失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所有權者의 財産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政府의 信用의 실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損害賠償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損害賠償은 國庫의 부담이 된다.

따라서 民間으로부터 借用하여 政府의 事務 또는 事業을 위하여 사용하는 動產에 관해서도 政府가 소유하는 動產과 같이 다루기 위하여 物品管理法의 適用을 받아야 한다.

둘째는 賃借動產의 效率의 使用이다. 政府가 사용하기 위하여 借用하는 動產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賃借料를 지급한다. 이러한 賃借料도 國會의 議決을 거친 歲出豫算에서 나가는 것이므로 歲出豫算으로 구입한 動產과 같이 效率的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物品管理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Ⅲ. 物品管理組織

1. 總括機關과 管理機關

가. 總括機關

財務部長官은 物品의 관리에 관한 制度 및 政策에 관한 사항을 管掌하며, 物品의 管理에 관한 政策의 決定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調達廳長 또는 각 中央官署의 長으로 하여금 物品의 管理狀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¹²⁾

이것은 收入·支出에 관한 財務部長官의 總括機能보다 더 강력한 기능이라 하겠다.¹³⁾ 자칫하면 金錢의 收入·支出보다 소홀하기 쉬운 物品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자는 데 그 趣旨가 있다고 하겠다.

總括機關으로서는 財務部長官 외에 調達廳長이 있다. 調達廳長은 각 中央官署의 長이 행하는 物品管理를 總括調整하며 物品의 管理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中央官署의 長으로 하여금 그 所管에 속하는 物品의 管理狀況에 관하여 통보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實地監査를 행하게 하며, 財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違法·不當한 사실의 是正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¹⁴⁾

나. 管理機關

각 中央官署의 長이 그 소관에 속하는 物品을 관리한다. 이곳에서 中央官署의 長이란 豫算會計法 第14條의 규정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하는 것으로서¹⁵⁾ 國會議長, 大法院長, 憲法裁判所長, 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 憲法 또는 政府組織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설치된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말한다.

中央官署의 長이 지니는 物品管理機能으로서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우리는 이곳에서 다음의 두가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現物管理機能

각 中央官署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物品의 관리에 관해서 모든 權限과 責任을 지니고 있으므로 物品의 現物의 保管 및 사용에 관하여 모든 權限과 責任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각 中央官署의 長이 그 소관에 속하는 모든 物品에 관

12) 物品管理法 제 7조 제 1항.

13) 豫算會計法 제 49조 및 제 56조 참조.

14) 物品管理法 제 7조 제 2항.

15) 物品管理法 제 2조 제 2항.

하여 具體的인 관리사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實際的으로 困難하며 不可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國庫金의 收入·支出의 경우와 같이 物品의 管理에 관해서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分擔管理케 할 수 밖에 없다.

(2) 總括管理機能

이리하여 中央官署의 長은 物品管理에 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지시를 하고 指揮監督을 하면서 物品管理를 담당케 하는 總括管理機能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總括管理機能의 수행을 위하여 中央官署의 장이 담당하는 업무로서 다음의 두기지를 들 수 있겠다.

첫째는 實施細部事項의 制定이다. 物品管理法이나 施行令 및 施行規則의 委任에 의하여 中央官署의 長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中央官署의 長은 財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在庫管理基準를 정해야 하며¹⁶⁾ 그 소관에 속하는 物品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物品이 있을 때에는 그 物品에 대하여 不用의 決定을 내려야 한다.¹⁷⁾ 이와 같은 實施細部事項의 결정이 總括管理機能의 수행을 위하여 中央官署의 長이 담당해야 할 첫째 業務이다.

둘째는 指揮監督이다. 中央官署의 長은 物品管理官 등을 임명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物品의 管理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데 이들을 指揮監督하여야 한다.

2. 物品管理官

가. 物品管理官의 任命

전술한 바와 같이 物品管理는 各中央官署의 長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기에 있어서 이것이 不可能하므로 구체적인 物品管理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物品管理官을 임명하게 된다.

物品管理官은 그 소관 公務員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中央官署의 소속 公務員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物品管理官의 임명은 특정한 직위를 지칭하여 행할 수 있다.¹⁸⁾

中央官署내에 物品管理官이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中央官署의 長은 그 중 1인을 總括物品管理官으로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物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總括·調整하게 하여야 한다.¹⁹⁾ 物品管理法이나 施行令은 호칭에 대하여 아무런

16) 物品管理法 제18조.

17) 物品管理法 제35조 제1항.

18) 物品管理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19) 物品管理法施行令 제7조 제1항.

인급이 없으나 物品管理法施行規則은 總括調整을 담당하는 물품관리관을 總括 物品管理官이라고 하고 있다.²⁰⁾

나. 物品管理官의 機能

物品管理官은 각 기관에 있어서의 물품관리의 책임자로서 각 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물품의 적절한 管理運用을 담당해야 한다. 物品管理官에 의한 物品의 適切한 在庫管理·조달·사용 등이 이루어지므로써 각 기관에 있어서의 행정의 효과성제고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物品管理官중 總括調整을 담당하는 總括物品管理官은 위에서 검토한 기능 외에 당해 중앙관서의 소관에 속하는 物品의 관리에 관하여 각종의 총괄조정기능도 수행한다.

3. 物品出納公務員

物品管理官은 위임된 범위내에서 物品管理를 담당할 책임이 있으며 물품인 원물의 출납보관에 관한 업무도 당연히 그의 책임에 속하나 특정한 경우에 物品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다른 公務員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物品管理官으로부터 物品의 出納 및 保管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公務員을 物品出納公務員이라 한다. 物品出納公務員의 임명도 物品管理官의 경우와 같이 특정한 직위를 지칭하여 행할 수 있다.²¹⁾

4. 物品運用官

物品管理官은 物品出納公務員에게 위임한 사무를 除外한 물품의 取得·出納·保管에 관한 지시·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행하여야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物品管理官은 그가 소속하는 官署의 公務員에게 國家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중인 物品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物品管理官으로부터 物品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物品運用官이라 한다.²²⁾

20) 物品管理法施行規則 제14조.

21) 物品管理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22) 物品管理法 제11조 제2항.

IV. 物品의 取得

1. 物品取得의 節次

物品의 保管·使用 및 處分 등의 행위는 物品管理法의 범위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나 物品의 取得은 豫算의 執行과 관련이 있는 까닭에 豫算會計法과도 관련이 있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가. 物品管理官의 청구

物品의 取得을 위해서는 먼저 物品管理官이 契約擔當公務員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청구함에 있어서 物品管理官은 物品需給管理計劃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計劃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하며, 그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物品管理官이 契約擔當公務員을 檢하고 있을 때에는 이러한 청구를 생략할 수 있다.²³⁾

나. 契約擔當公務員의 조치

物品管理官의 청구가 있으면 契約擔當公務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豫算의 범위 안에서 物品을 取得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取得하고자 하는 물품이 調達基金法 제 2 조의 規定에 의한 調達物資일 때에는 調達廳長에게 그 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集中購買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調達物資는 集中購買方式에 의하여 取得하여야 하며 各부처에 의한 分散購買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② 取得하고자 하는 물품이 標準化되어 있는 物品인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取得하여야 한다.²⁴⁾

다. 檢 收

契約擔當公務員의 필요한 조치가 끝나서 物品의 收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中尉官署의 長 또는 그 위임을 公務員이 지명하는 關係公務員이나 技術者의 檢 수를 받아야 한다.²⁵⁾

2. 物品取得의 制限

物品取得에는 여러가지 制限이 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調達物資는

21) 物品管理法 제28조 제1항 및 物品管理法施行令 제31조.

22) 物品管理法 제28조 제2항 및 物品管理法施行令 제34조.

23) 物品管理法 제28조 제3항.

調達廳을 통하여 取得하여야 하며 標準化되어 있는 물품은 이를 우선적으로 取得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그 좋은 예이다.

이밖에도 調達廳長이 管理轉換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소요를 照會중인 경우 그 조회중인 물품과 동일한 品名의 物品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調達廳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이를 우선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²⁶⁾

V. 物品의 保管과 使用

1. 物品의 保管

가. 内部保管의 原則

物品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國家의 시설에 内部保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外部保管이 허용된다.²⁷⁾

國家施設에 보관해야 사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外部保管에 따르는 保管料나 倉庫의 賃借料 등을 절약하자는 趣旨도 있을 것이다.

나. 外部施設에 의한 보관

物品은 内部保管을 원칙으로 하나 物品管理官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國家 이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²⁸⁾ 物品의 外部保管을 위해서는 物品管理官이 契約擔當公務員에게 그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物品管理官이 契約擔當公務員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이러한 청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出納命令 없는 物品의 出納禁止

物品의 適正한 保管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하나가 물품의 無斷拂出禁止라 하겠다. 이리하여 物品管理法은 物品管理官의 出納命令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物品管理官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物品出納公務員에게 출납을 명하여야 하며, 物品出納公務員은 이러한 命令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²⁹⁾

라. 修繕과 改造

物品의 적정한 보관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修繕과 改造도 들 수 있다. 物

2) 物品管理法 제29조 및 物品管理法施行令 제34조 제3항.

2) 物品管理法 제30조.

2) 物品管理法 제30조 但書.

2) 物品管理法 제31조 제1항 제2항 및 物品管理法施行令 제35조 제1항.

品出納公務員은 그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物品管理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物品管理官이 物品出納公務員으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물품과 관계된 조치는 후술하는 處分과 관련이 있으므로 그곳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그러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物品에 관한 조치는 物品의 보관과 관련이 있다. 物品管理官은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物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契約擔當公務員 기타 關係公務員에게 그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³⁰⁾

2. 物品의 使用

物品의 取得·保管·處分도 중요하나 가장 핵심적인 행위는 使用이라 하겠다. 物品은 본래 사용되어야 할 目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가장 效率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가. 使用節次

物品의 사용은 物品管理官이 직접 행하는 경우와 物品運用官이 행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物品管理官이 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목적을 명백히 하여 物品運用官이나 物品使用公務員에게 알려야 한다. 物品運用官이 행하는 경우에는 物品管理官이 관리하고 있는 物品의 제공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物品의 사용이 物品管理官에 의하여 행하여지느냐 物品運用官에 의하여 행하여 지느냐에 따라서 사용 및 반납에 관한 節次가 다소 달라지는 것이다.

物品運用官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物品運用官이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立場에 있으므로 사용할 物品에 관하여 物品管理官에게 사용을 위한 拂出을 청구하여야 한다.

物品管理官은 物品運用官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拂出命書を 내리거나 직접 拂出하게 되는데 物品運用官으로부터의 청구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자기의 권한에 의하여 拂出命書を 내리거나 직접 拂出할 수 있다. 物品管理官이 사용의 필요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당연하다 하겠다.

나. 返納의 節次

30) 物品管理法 제32조.

物品運用官이나 物品使用公務員이 사용중인 物品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物品 또는 수선이나 개조를 요하는 物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物品管理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物品管理官이 이러한 報告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物品運用官이나 物品使用公務員에게 그 物品의 返納을 명하여야 한다.³¹⁾ 이 중 수선이나 개조를 요하는 物品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契約擔當公務員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VI. 物品의 處分

1. 處分の 必要性

物品을 取得하여 保管・使用하는 過程에 있어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物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物品은 그대로 보관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保管施設 등의 사정으로 보관할 수 없는 경우도 일어난다. 이리하여 物品管理法은 不用品 등의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物品의 처분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國家財政에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不正의 소지도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2. 不用 등의 決定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物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 不用決定 등을 내려야 하는데 이 과정은 그야말로 慎重을 요한다. 따라서 物品管理法은 決定權者, 決定의 기준, 決定의 절차 등에 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 決定權者

不用의 決定權者는 원칙적으로 中央官署의 長이며 예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物品 등의 不用決定은 物品管理官이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中央官署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物品管理官에게 원칙적으로 不用決定權을 부여하고 있는 日本의 物品管理法에 비하여³²⁾ 우리나라 物品管理法이 物品의 처분에 관하여 다소 엄격하다는 것

31) 物品管理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32) 日本物品管理法 제27조 제1항.

을 일 수 있다.

나. 不用決定 및 廢棄의 基準

中央官署의 長 또는 物品管理官이 不用決定을 하거나 廢棄處分을 할 때에는 엄격한 기준에 의거해야 하는데 物品管理法施行規則은 不用決定을 위한 基準으로서 여러가지를 들고 있는데 省略하기로 한다.³³⁾

廢棄處分을 할 수 있는 物品은 ① 管理轉換・讓與・賣却 등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物品과 ② 變質・腐敗 기타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物品이다.³⁴⁾

다. 不用決定의 節次

전술한 바와 같이 物品의 不用決定은 中央官署의 長이 하는 것이 原則이나 예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物品의 不用決定은 物品管理官이 中央官署의 長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

中央官署의 長이 그 소관에 속하는 物品에 대하여 不用決定을 할 때에는 특별한 物品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調達廳長에게 不用決定通報를 하여야 한다.³⁵⁾ 物品管理官이 不用決定을 할 때에는 不用決定通報書 2통을 작성하여 中央官署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調達廳長이 中央官署의 長으로부터 不用의 決定을 통보받으면 해당 中央官署의 長에게 그 처분의 방법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극히 中央集權의이며 各部處에 별로 裁量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不用品の 處分

일단 不用品이라고 決定된 物品은 처분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不用決定을 받은 物品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처분의 方法으로서는 賣却・貸付・讓與 및 解體・廢棄 등이 있다.

가. 賣却

(1) 賣却의 制限

기로부터 매각할 목적으로 國家가 보유하고 있는 物品이 없는 것은 아니나 物品管理法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物品은 政府部處 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매각해서는

33) 物品管理法施行規則 제51조 제1항.

34) 物品管理法施行規則 제51조 제2항.

35) 物品管理法施行令 제39조 제2항 및 物品管理法施行規則 제52조.

안된다. 특히 아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物品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낡았다고 하여 低廉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다시 高價로 新品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일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物品管理法은 「物品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物品이거나 不用의 결정을 한 物品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³⁶⁾

(2) 賣却의 節次

매각을 목적으로 한 物品으로서 物品需給管理計劃에 정하여진 物品에 대하여는 物品管理官이 需給管理計劃의 범위 안에서 契約擔當公務員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밖의 物品의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物品管理官이 契約擔當公務員에게 賣却에 관한 필요한 措置를 청구한다.³⁷⁾

契約擔當公務員이 物品管理官의 청구에 의하여 物品의 賣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구한 物品管理官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³⁸⁾

나. 貸 付

(1) 貸付의 제한

매각의 경우와 같이 物品의 대부에 관해서도 엄격한 제한이 있다. 「物品은 貸付를 목적으로 한 物品이거나 貸付하여도 國家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物品이 아니면 이를 貸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貸付에 대한 또 하나의 제한은 無償貸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적정한 貸付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³⁹⁾ 物品을 대부하는 경우의 貸付料는 그 物品의 評價額의 年 6%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物品의 評價額은 당해 物品의 帳簿價格과 耐用期間 등을 참작하여 中央官署의 長이 정하여야 한다.⁴⁰⁾

(2) 無償貸付

전술한 마와 같이 無償貸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政府投資機關의 出資會社 등에 한하여 無償貸付가 가능하나⁴¹⁾ 이 경우에도 調達廳長과의 協議를 거쳐야 한다.

다. 讓 與

36) 物品管理法 제36조 제1항.

37) 物品管理法 제36조 제2항.

38) 物品管理法施行規則 제60조.

39) 物品管理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40) 物品管理法施行令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41) 物品管理法施行令 제45조 제3항.

不用品을 활용하는 方案의 하나로서 특정한 단체나 機關에 대한 無償讓與를 들 수 있다. 매각이나 대부의 경우와 같이 양여에 관해서도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

첫째로 無償讓與가 허용되는 物品에 제한이 있다. 둘째로 無償讓與가 허용되는 團體나 機關도 제한되어 있다. 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政府出捐機關・政府投資機關의 出資會社 등에 한한다.⁴²⁾

다. 廢棄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物品管理官이 不用決定을 한 物品 중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不適當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物品이 있을 때에는 廢棄할 수 있다.⁴³⁾ 예를 들면 깊은 산중에서 不用決定을 한 物品에 관하여 30리까지 반출하여 매각하면 賣却代金보다 운반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매각하는 것보다 廢棄處分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마. 解體

不用決定을 내린 物品 중 部分品을 활용하는 것이 原形대로 매각하는 것 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解體하여 利用可能한 部分品을 活用하고 殘餘品만 매각 또는 廢棄하는 解體도 인정되고 있다.⁴⁴⁾

4. 出資・私權設定의 제한

우리는 앞에서 國家가 소유하는 物品의 처분에 관하여 가해지고 있는 여러가지 制限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제한들은 주로 不用決定을 내린 物品에 관한 處分과 관련된 제한이었다.

이러한 제한 외에도 物品管理法 제42조는 「物品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出資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私權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가. 出資의 制限

일반적으로 法人에 대한 출자를 動産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國家도 特殊法人에 대하여 動産으로 出資하는 예가 있다. 그러나 物品을 출자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物品 본래의 사용목적에 違背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現物出資는 現金出資와 같이 國會의 엄격한 審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豫算會計法 제18조는 國家가 現物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歲入歲出豫算外로 처리할 수 있다고

42) 物品管理法施行令 제42조 제1항 및 제3항.

43) 物品管理法 제35조 제2항.

44) 物品管理法施行規則 제56조.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物品管理法은 法律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物品은 출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나. 私權設定의 制限

所有權의 이전 또는 占有移轉의 수반없이, 國家에 의한 이용을 계속하면서, 國家가 소유하는 物品에 抵當權 등의 私權을 설정하는 것도 法律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다.

國家가 이용할 物品에 抵當權 등의 私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契約條件에 따라 抵當權 등이 실행되면 國家의 物品이 처분되어 결과적으로 본래 예정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고 國家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까닭이다.